

-2020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-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(3차) 기업 모집 공고

전라북도 선도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 요인 해소 및 생산성 향상, 비용 절감을 위한 『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』을 공고하오니,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도기업은 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09. 10.

(재)전북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
-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
- 제조공정의 낭비를 분석하여 제조 및 생산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통해, 불량률 감소 및 비용절감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

□ 신청자격

- 신청자격 : 전라북도 선도기업 지정기업
- 신청횟수 : 선도기업 당 1회 / 年
 - 선도기업 지정기간(5년) 동안 3회 협약 가능

□ 지원분야 및 지원 규모

- 금회 지원예정액 : 1.4억원
 - 총사업비 7.5억원, 기 지원금 6.1억원

구 분	지원유형	지원금액	수행기간	기업부담금
사업화지원	공정개선(3 type)	최대 5천만원	최대 8개월	총사업비의 10%~30%
	시제품 제작(1 type)	최대 3천만원		

※ 지원유형에 따른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2. 지원내용 참조

2 지원내용

○ 항목별 지원내용

- 공 정 개 선 : 공정시스템 개선, 공정단축, 사출(금형) 공정 개선,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 개선

- 시제품제작 :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

구 분	지 원 내 용
공정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성능·품질 향상, 생산시간 단축, 비용절감, 불량률 감소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공정개선지원 - 특히,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매출 신장 및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 우대 - 지원예시 : (종전) ①→②→③→④ ⇨ (개선) ①→②→③ ◦ 부품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(※ 단, ERP 및 MES 등 시스템 구축 제외)
시제품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개발기술의 상용화(상품화 및 품격 향상 등 시장화)를 위한 시제품 제작

○ 항목별 지원금액 및 한도

- 공정개선 항목 3가지 Type 중 단일 또는 다중선택 가능
- 기업부담금은 현금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매칭
-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지원한도 확대, 기업부담금 축소하여 한시적 운영

구 분	세 부 항 목	지 원 금 액	지 원 한도	기 업 부 담 금
공정 개선	◦ 공정시스템, 공정단축 개선	최대 5천만원 (부가세 제외)	90% 이하	10% 이상
	◦ 사출(금형)공정 개선		70% 이하	30% 이상
	◦ 기존에 있는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 개선			
시제품 제작	◦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	최대 3천만원 (부가세 제외)	90% 이하	10% 이상

○ 주의사항

- 사출(금형)공정개선은 신청기업 제조현장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, 타 기업의 제조현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원불가
- 본 사업으로 제작된 금형을 사업종료 후 타 기업으로 무단 이전하는 경우 사업비 환수
- 선정 평가 시, 사업비 사용 계획에 대한 과다계상 부분은 조정

3 사업수행 절차

수행절차	수행주체	상 세 내 용	수행기간
사업공고 및 접수	선도기업→TP	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	09.10~09.24
서류심사	선도기업↔TP	지원 요건 충족을 위한 제출 서류 검토	09.25~09.29
현장실태조사	선도기업↔TP	외부전문가 현장 실태 조사	10.06~10.08
대면평가 및 선정	평가위원회	추진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	10.16

협약체결 사업비 지급	TP↔선도기업	통보 후 10일 이내 협약체결	10.30
사업수행	선도기업	사업계획 수행 (필요시 중간 현장점검 실시)	협약기간에 따름
최종결과보고	선도기업→TP	사업추진 결과 보고	사업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
최종평가	평가위원회	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현장평가 ※ 미흡과제는 수정·보완을 거쳐 재평가	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
사후관리	선도기업↔TP	선도기업 지원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	사업평가 종료 후 3년

- ※ 코로나 19로 인해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”일 경우, 현장실태조사는 서류평가로 대체될 수 있으며, 대면평가는 비대면 평가로 진행 될 수 있음
 ※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경 가능

4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
사업의 필요성 (20)	◦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- 사업의 필요성 및 문제 도출의 적정성
	◦ 경영진의 추진의지 - 필요자금 대응력 및 경영지원 등
목표의 명확성 (30)	◦ 추진 내용의 차별성 - 사업내용의 혁신성 및 독창성 등
	◦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- 사업범위 및 목표의 명확성 등
	◦ 애로목표의 실현가능성 - 사업의 시의성 및 실현 가능성 등
추진방법의 적정성 (30)	◦ 사업 추진방법의 적합성 - 추진전략, 연구방법 및 내용의 구체성 등
	◦ 사업기간의 적정성 - 사업추진 내용과 부합하는 기간 설정 등
	◦ 사업수행 인력 역량 - 사업 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역량 등
파급효과 (20)	◦ 매출 및 이익 증대 가능성 -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, 성장성 등
	◦ 파급효과 - 고용창출, 기술적·사회적 기여도 등

5 사업 신청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20. 09. 10(목) ~ 2020. 09. 24(목), 18:00까지
- 접수기간 : 2020. 09. 21(월) ~ 2020. 09. 24(목), 18:00까지
-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)
 - 접수처 : <http://rnd.jbtp.or.kr>(전북R&D종합정보시스템)
 - ※ 홈페이지 회원가입/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 과제신청으로 접수

※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[전북테크노파크 R&D관리 홈페이지] 참조

※ 전산등록마감일에는 데이터접속 증가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(전산접수 가능용량 100MB)

○ 문의처 : (재)전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팀 김정희 선임연구원

(☎ 063-219-2132 / E-Mail : only1905@jbtp.or.kr)

○ 제출서류

- 사업 신청서, 제출서류 등 <http://rnd.jbtp.or.kr>에서 다운로드

- 제출서류 순서대로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
(파일명: 2020년 선도기업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(3차)_기업명)

No	제 출 서 류	비고
1	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서류	서식 1호
2	사업비산출내역 증빙자료(도면, 견적서, 원가내역서 등)	공통(필수)
3	신청기업 2018년, 2019년도 재무제표	공통(필수)
4	신청기업 사업자 등록증	공통(필수)
5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공통(필수)
6	과제책임자 및 실무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	공통(필수)

※ 재무제표 제출: 감사보고서(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), 회계법인 발급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제출

6 선정제외 대상

○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업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 책임자 등)가

- 접수마감일 현재,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
-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- 부도, 휴·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

○ 공고일 현재,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

- 4대 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

○ 주관기업,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 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

○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,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,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

○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(2018년 ~ 2019년) 연속, 유동 비율이 30%이하 또는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

○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

○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
7

유의사항

- 등록기간 내 전산 미제출 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함
-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0.01.01.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- 전북테크노파크는 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일명 김영란법)”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기업지원사업 선정 관련 청탁을 받지 않음.
-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전라북도 도비지원 R&D사업 공통운영 및 평가관리 세부지침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.